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 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7.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7.의 ①에 정한 암에 대한「책임개시일」이 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91일이상 입원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④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암 이외의 암”을 말하고, “특정암”이라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 (이하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① “3대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3대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여성특정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 ①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6.**(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7.**(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암·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3. 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사고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9.**(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0.**(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청약의 철회 및 보험료 반환)** ① 가계성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반환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2.**(대표자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3.**(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과 변경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4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4.**(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6.**(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보험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17.**(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 상실된 경우 보험계 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연 11.0%>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1. 7. 및 9.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8.**(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지났거나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 또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13.의 1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보험사고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29.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그러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③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해가 위 2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9.**(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 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이 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약관의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별표 1】“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18.의 ②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위 ②,③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0.**(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 (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월납기준 이미납입한 보험료	없 음

보험사고의 발생

22.**(손해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3.**(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급여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등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암입원치료확인서, 암수술확인서 등)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⑵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⑴의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보장내용

24.**(암진단급여금)**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① 진단이 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진단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구좌 기준)

구 분	암진단급여금	
	가입후 2년이내	가입후 2년초과
특 정 암 진단시	1,250 만원	2,500 만원
일 반 암 진단시	750 만원	1,500 만원
상피내암 진단시	100 만원	200 만원

⑵ 특정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암진단급여금에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특정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5.**(암입원급여금 및 암소득보상급여금)**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3.②의 입원시는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구좌 기준)

구 분	암입원급여금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만원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3.③의 이유로 입원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소득보상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구좌 기준)

구 분	암소득보상 급여금
각 91일, 121일, 151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각 계속입원일수(91,121,151일) 해당일에 100만원씩 지급
181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계속입원일수(181일) 해당일부터 매 1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확정지급
366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계속입원일수(366일) 해당일부터 매 1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확정지급
546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계속입원일수(546일) 해당일부터 매 1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확정지급
731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계속입원일수(731일) 해당일부터 매 1개월마다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③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 및 암소득보상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암입원급여금 및 암소득보상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위 ②의 암소득보상급여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지급분에 한하여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 및 암소득보상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6.**(암수술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④의 이유로 수술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구좌 기준)

구 분	암수술급여금
특 정 암 수술시	수술 1회당 600 만원
일 반 암 수술시	수술 1회당 300 만원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암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암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27.**(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22.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등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23.의 보험금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등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8.**(보험금청구권의 상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9.**(계약의 소멸)**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 「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위 ①, ②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0.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7. ①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별표 6】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상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31.**(보험계약자 대출)**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①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2.**(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 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4.**(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6.**(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이 계약중 계약의 당사자 및 보험료납입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 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 한도 5천만원)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7.**(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 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8.**(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1. 사망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사망보험금	
	가입후 2년이내	가입후 2년초과
특정암 사망	1,000 만원	2,000 만원
일반암 사망	500 만원	1,000 만원
기 타 사 망	50만원 × 사고발생시까지의 경과년수 단, 경과년수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특정암 및 일반암 사망보험금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③ 위 ①의 “기타 사망”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②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신체의 사고로 손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망 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기타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보험계약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보험계약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위 ①의 “사고발생시까지의 경과년수”라 함은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계약일로부터 사고발생일이 속하는 보험년도말까지의 경과 년수를 말합니다.

⑤ 특정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일반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암사망보험금에서 일반암사망보험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 ①항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4.**(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종 (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월납기준 이미납입한 보험료	없 음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가. 사망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사망보험금
지 급 금 액	보험가입금액 × 사고발생시까지의 경과년수

② 위 ①의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암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신체의 사고로 손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망 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기타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보험계약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보험계약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 위 ①의 "사고발생시까지의 경과년수"라 함은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계약일로부터 사고발생일이 속하는 보험년도말까지의 경과 년수를 말합니다.

3.**(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담보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나. 선지급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적용대상)**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 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4.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7.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의 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1.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①. 2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8.**(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7.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때 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①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 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용어풀이 >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질환,뇌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의한 상해사고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중 상해 사고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상해사고
⑫ 위 ⑪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상해사고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⑤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⑥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

4.**(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손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고유형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사망보험금
주말교통사고	보험가입금액의 4배
평일교통사고	보험가입금액의 2배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위 ①의 주말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평일이라 함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5.**(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손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 6】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별표 6】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③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과 ②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손해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6.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등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등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또는 1.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1.의 상해가 증대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의 상해가 증대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9.**(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위 3. 4.에서 각각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10.**(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3. 응급비용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는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구급차라 함은 119 구급대 및 129 응급환자정보센타의 지시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차를 말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위 1.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

4.**(손해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4.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등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 등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4.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 · 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⓵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⓶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등 숙박 시설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 합니다)의 소유,사용 및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계약후 알릴 의무) ⓵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

4.(손해의 통지 및 조사) 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① 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1]의 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손해방지 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위 [1]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위 [1]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1]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2], [3]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위 ①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①의 ①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 위 ①의 ②,③,④ 및 ⑤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위 ①의 ①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①의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①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8.(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4.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등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등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0.(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위 ①,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11.(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5. 암사망 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통약관 7. ①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 해당일로부터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암사망유족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10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암사망 유족연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1.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6.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별표 7】“과로사 관련 특정질병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과로사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함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24 26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 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보험계약의 체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 7. 및 위 ①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 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암 및 과로사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 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9. 단체취급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 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제 1종단체 (급여관계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② 제 2종단체 (법정 단체): 제 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 3종단체 (규약 단체): 제 1종 및 제 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대표자의 선정) ①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자 및 위 1 에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②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14.의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미만이 된 때에는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①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① 단체 소속원이 증가되어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계약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해지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 1종 (만기환급형)

(기준 : 10구좌,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412,800원	92,400원
3 년	1,238,400원	818,800원
5 년	2,064,000원	1,622,200원
7 년	2,889,600원	2,531,400원
10 년	4,128,000원	4,128,000원

■ 2종 (순수보장형)

(기준 : 10구좌, 남자 40세,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96,000원	0원
3 년	288,000원	48,200원
5 년	480,000원	81,800원
7 년	672,000원	84,400원
10 년	960,000원	0원

2. 사망담보특약

■ 1종 (만기환급형)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182,400원	54,800원
3 년	547,200원	381,600원
5 년	912,000원	741,300원
7 년	1,276,800원	1,142,000원
10 년	1,824,000원	1,824,000원

■ 2종 (순수보장형)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43,200원	0원
3 년	129,600원	36,800원
5 년	216,000원	57,300원
7 년	302,400원	58,600원
10 년	432,000원	0원

3. 사망담보 추가특약

(기준: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2,400원	1,600원
3 년	7,200원	4,400원
5 년	12,000원	6,200원
7 년	16,800원	6,200원
10 년	24,000원	0원

4. 암사망 유족연금담보 특약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81,600원	36,600원
3 년	244,800원	104,200원
5 년	408,000원	141,200원
7 년	571,200원	135,500원
10 년	816,000원	0원

5.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담보 특약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 년	13,200원	0원
3 년	39,600원	6,000원
5 년	66,000원	11,600원
7 년	92,400원	12,200원
10 년	132,000원	0원

6. 기타특약

- 해지환급금 없음

【 별표 2 】 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 신생물	C16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3.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 신생물	C24
5.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C 50
2. 외음의 악성신생물	C 51
3. 질의 악성신생물	C 52
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 53
5.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C 54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 55
7. 난소의 악성신생물	C 56
8. 기타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 57
9. 태반의 악성신생물	C 58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후유장해지급율표

(단위 : %)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3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 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4) 지라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별표 7 】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 간염	B15 B19
2. 고혈압성 심장질환	I11
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 질환	I13
4. 급성심근경색증	I21
5. 협심증	I20
6. 거미막하 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12. 고혈압성 뇌병증	I67.4
13. 간의 질환	K70 K77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분류번호 K70 K77에 해당하는 간질환중 간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